◉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32호
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103호(관보 제17473호, 2011.03.25.), 제2011-208호(관보 제17506호, 2011.05.12.), 제2012-11호(관보 제17680호, 2012.01.16.), 제2013-136호(관보 제17967호, 2013.03.08.)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339호(관보 제18044호, 2013.06.25.), 제2014-65호(관보 제18203호, 2014.02.14.), 제2015-298호(관보 제18510호, 2015.05.13.), 제2015-1098호(관보 제18672호, 2016.01.05.), 제2016-212호(관보 제18745호, 2016.04.22.), 제2016-786호(관보 제18897호, 2016.12.01.), 제2017-740호(관보 제19129호, 2017.11.20.), 제2018-73호(관보 제19187호, 2018.02.01.), 제2018-625호(관보 제19366호, 2018.10.29.), 제2019-715호(관보 제19649호, 2019.12.16.)로 고시된 소사~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변경(14차) 승인하고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 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,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각 조항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03월 08일

국토교통부장관

소사~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(14차)

1. 사업의 명칭 (변경 없음)

 ○ 소사∽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

2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(변경 없음)

 ○ 명 칭 : 이레일주식회사 대표이사

 ○ 주 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185

 ○ 명 칭 :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(토지 등 보상 관련업무에 한함)

 ○ 주 소 :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

 ○ 명 칭 : 시흥시장 (신천정거장 추가출입구 지장물 처리업무에 한함)

 ○ 주 소 : 시흥시 시청로 20

3. 사업의 목적 (변경 없음)

 ○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철도중심 교통서비스 제공

 ○ 경의선 연계를 통한 남북간선 철도망 구축

 ○ 경인선과 안산선을 연계하는 철도건설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

4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(변경 없음)

 ○ 부천시(소사동, 소사본동)

 ○ 시흥시(대야동, 신천동, 신현동, 장현동, 하중동, 능곡동, 군자동)

 ○ 안산시(선부동, 초지동, 원곡동, 원시동), 인천광역시

5. 사업면적(변경 없음)

○ 편입(785,434.1㎡)

○ 임대(1,927.1㎡)

6. 사업의 내용 (변경)

○ 총투자비(변경)

- 당초 : 1,549,534백만원(경상가)
- 변경 : 1,862,317백만원(경상가)

○ 사업규모(변경)

•본선(변경 없음)

•부대사업(변경)

- 시흥시청환승센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삭제

•신현교육훈련관 설치 공사(변경 없음)

7. 사업기간(변경 없음)

○ 본선 및 추가시설

-공사기간 : 2011.04.22 ~ 2019.12.31

(본선) 2011.04.22 ~ 2018.06.15

(추가시설) 2016.01.01 ~ 2019.12.31

(신천복합역사 부대사업) 2017.09.01 ~ 2019.01.31

- 운영기간 : 2018.06.16 ~ 2038.06.15

(개통 후 20년, 단 추가시설은 개통일부터 2038.06.15)

○ 신현교육훈련관 설치공사

- 공사기간 : 2019.12. ~ 2020.06.30
- 운영기간 : 운영개시일부터 2038.06.15까지

8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변경 없음.

9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: 변경 없음.